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5. 25 선고 2021가단6894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지형, 홍경원, 배경아

피고B

변론 종결2023. 4. 20.

판결 선고2023. 5. 25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2021. 4. 2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, (1)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4082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18. 4. 18. 위 법원으로부터 "C은 원고에게 5,270,833원과 그 중 3,995,238원에 대하여 2017. 10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, (2)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6502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18. 3. 21. 위 법원으로부터 "C은 원고에게 6,817,054원과 그 중 5,603,905원에 대하여 2017. 8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, (3)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0168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19. 12. 13. 위 법원으로부터 "C은 원고에게 2,157,412원과 그 중 1,260,436원에 대하여 2019. 6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(이하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.

나.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. 3. 7. 사망하였고(이하 D을 '망인'이라 한다),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C을 비롯한 6명의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 그런데 C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과 피고는 2021. 4. 29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 부분을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다. 이 사건 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/15 지분이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1,704,000원의 채무가 있었다.

1	2017. 03. 26.	3,995,000원	A	신용정보 조회 결과
2	2017. 06. 28.	1,260,000원	A	신용정보 조회 결과
3	2017. 03. 20.	18,697,000원	F	신용정보 조회 결과

1	2017. 03. 26.	3,995,000원	A	신용정보 조회 결과
4	2017. 03. 27.	3,897,000원	G	신용정보 조회 결과
5	2017. 03. 02.	3,855,000원	H	신용정보 조회 결과
6	2017. 11. 10.	360,000,000원	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	신용정보 조회 결과
7	2021. 01. 16.	50,000,000원	국세청 군산세무서	신용정보 조회 결과
합계	441,704,000원			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E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관한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이 사건 계약은 C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유하게 된 재산으로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행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계약은 C이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, C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(갑 제16호증)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(갑 제13호증의 1 내지 7)의 각 기재와도 배치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문헌정

별지